

# 인천광역시서해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
기관의장

람

제2026호

2026. 9. 10.(목)

차 례

고 시

○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156호 2027년 도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임금 고시

—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해구 고시 제2026-156호

## 2027년도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임금 고시

「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임금 조례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27년도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10일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1. 고 시 명 : 2027년도 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임금
2. 목 적
  - 인천광역시 서해구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3. 적용기간 : 2027. 1. 1. ~ 2027. 12. 31.
4. 주요내용
  - **생활임금액 : 12,630원(시급)**
  - 생활임금 적용항목 : 통상임금(기본급+제수당)
    - 급식보조비, 교통비 등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제수당 포함  
(단, 초과근무수당, 연장근로 수당 제외)
  - 생활임금 적용대상
    -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노동자
    -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
  - \* 생활임금 적용 제외자
    -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
    -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
    -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

## 5. 기 타

- 서해구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: 기업일자리정책과(일자리팀, 560-0862)